

주요 내용

1. 조세관리법

- 2021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토지 임대료의 납부 기한 연장

02. 법인세 (CIT)

-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위한 기부금 및 후원금
- 외국인 투자자 간의 자본 양수양도 활동에 대한 법인세 납세여부
- 연결재무제표가 있는 기업에 법인세 30% 감면

03. 개인소득세 (PIT)

- 직원에게 현물로 지급된 선물

04. 부가가치세 (VAT)

- 보조금이 서비스 수수료 성격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 수출 가공기업 간의 가공 활동은 VAT 면제되는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05. 외국인계약자제

- 현지 수출입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제
- 외국인 계약자가 "직접법" 신고방법을 적용한 경우 최종 정산 기간

06. 무역 및 관세

- 재무부는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전자인지 인쇄, 발급 관리 및 사용을 안내하는 제23/2021/TT-BTC호 시행규칙을 공표
- EU- 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조항에 대한 실제적 적용에 대한 설명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조항을 수행하기 위한 일부 지침 내용
- 2021년2월23일에 제879/TCHQ-TXNK호 공문 적용 지침
- 수출가공기업은 해외 기업의 가공 활동을 수행할 때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면제.
-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하드펜스" 구축 지침.



신규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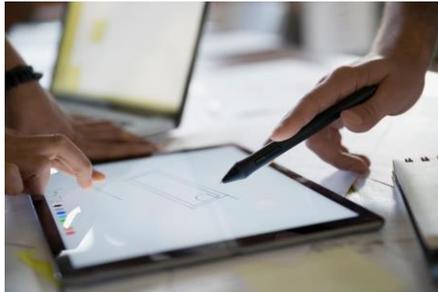
2021년 부가가치세 ("VAT"), 법인세 ("CIT"), 개인소득세 ("PIT"), 토지 임대료의 납부 기한 연장

2021년 04월 19일, 정부는 부가가치세 ("VAT"), 법인세 ("CIT"), 개인소득세 ("PIT"), 토지 임대료의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제 52/2021/ND-CP호 시행령을 공표하였으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 적용대상은 일부의 경제활동 분야 (제41/2020/ND-CP호 시행령과 대비 많이 추가됨)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개인 및 가족사업자; 소기업 및 초소기업; 신용기관; 외국 은행의 지점등 이다.
-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세금은 다음과 같다:
 - VAT (수입 VAT 제외): 2021년의 첫 8개월 (월별 신고할 경우) 및 첫 6개월 (분기별 신고할 경우)
 - CIT: 2021년의 1분기 및 2분기의 일시 납부세액
 - 개인 및 가족사업자의 경우 VAT, PIT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 2021년 첫 기에 납부해야 한 토지 임대료
- 연장 가능 대상 납세자는 연장 가능한 모든 세금에 대한 연장 신청서를 2021년 07월 30일까지 세금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정부의 2021년 04월 19일 제52/2021/ND-CP호 시행령 - 2021년 04월 23일에 딜로이트의 세무뉴스를 참고 하십시오)

조세관리법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신규 규정

Covid-19 예방을 위한 기부/후원 비용

2021년 03월 31일 정부는 Covid-19 예방 활동을 위한 기부금 및 후원금에 대해 공제비용으로의 처리를 안내하는 제44/2021/ND-CP호 시행령 (“제44호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Covid-19 예방 활동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의 형식으로 된) 기부금 및 후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 베트남에서 Covid-19 예방 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된 후원 및 기부 비용;
- 제44호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규정된 단체를 통해 후원 및 기부;
- 다음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제44호 시행령에 첨부된 양식으로 된 기부/후원이 확인된 증빙 (기업 대표자 및 수령 당사자 대표자에 의해 서명·날인됨) 및 법규정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

제44호 시행령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2020년 및 2021년의 과세기간에 적용된다.

(정부의 2021년03월31일 제44/2021/ND-CP호 시행령)

외국인 투자자간의 자본양수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여부

자본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외국인 투자자이며, 베트남 투자법령, 기업법령에 따라 활동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업체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는 업체)가 외국 업체를 대신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할 책임이 있다.

양도가격과 관련하여 정상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업체의 자본양도 실제 현황 및 유사한 자본 양도 사례를 참고하여 양도시점까지 회사의 재무제표 및 양도 활동에 대한 CIT신고 서류를 검토한 기반으로 법규정에 따라 양도 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다.

(세무총국의 2021년03월11일 제615/TCT-CS호 OL)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 업체에 CIT 30% 감면

(2020년에 매출액이 2,000억동 미만의 업체)

제116/2020/QH14호 결의 및 제114/2020/ND-CP호 시행령에 따라 CIT 감면 가능한 대상을 결정하는 수익 기준은 2020년 연결재무제표상 명시된 지점의 수익도 포함한다.

(세무총국의 2021년04월05일 제967/TCT-CS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 문서

직원에게 현물로 지급된 선물

회사가 직원에게 현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조 10항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PIT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본 공문은 해당 소득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언급하지 않았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4월5일 제10145/CTHN-TTHT호 OL)

개인소득세 (PIT)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부가가치세 (VAT)



지침 문서

보조금이 서비스 수수료 성격인 경우 VAT 과세됨

보조금이란 프로모션, 광고, 보증 및 수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VAT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219/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5조 1항)

따라서 유통업체 본사가 판매 지원 프로그램, 고객 관리 지원, 운송 지원, 마케팅, 제품 전시 등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할 경우, 대리점은 이러한 보조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발행하고, VAT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단, 유통업체 본사가 VAT 영수증 혹은 판매영수증을 발행하는지 그리고 VAT 10% 또는 판매비율로 발행하는지 여부는 유통업체의 세금 납부 방법(직접 또는 공제)에 따른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04월05일 제10143/CTHN-TTHT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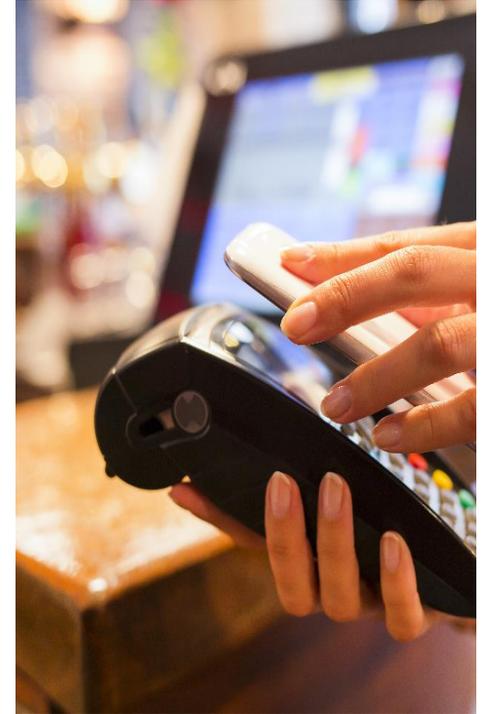
수출가공기업(EPE) 간의 임가공 활동은 VAT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함.

제 219/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4조 20항에 따라 수출가공기업 ("EPE")간의 임가공활동은 VAT가 면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제119/2014/TT-BTC호 시행 규칙 제5조 1항 b점에 따라 계산서 (EPE용)를 발행해야 한다.

2020년 12월 05일부터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제126/2020/ND-CP호 시행령의 신규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EPE 기업은 VAT 신고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제7조, 3항)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03월26일 제9054/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 계약자세



지침 문서

현지 수출입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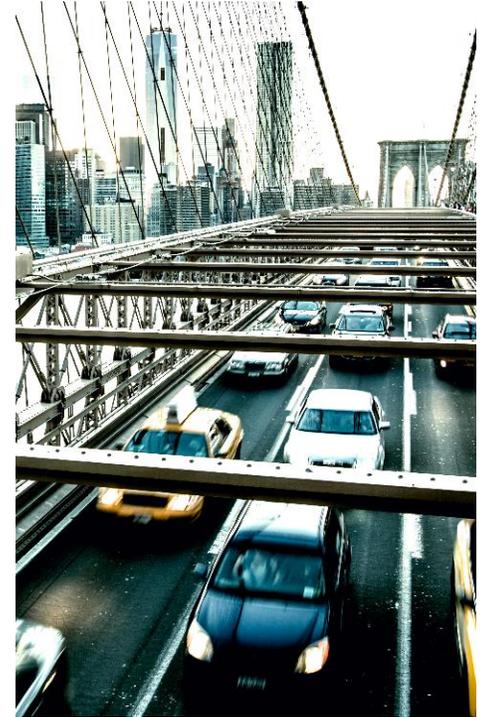
외국기업(A)이 베트남기업(B)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다른 외국기업(C)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국기업(C)은 이러한 상품을 다른 베트남기업(D)에 판매한 경우, 물품이 베트남기업(B)에서 베트남기업(D)로 직송되면 베트남기업(D)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근거하여 베트남에서 발생한 외국기업(C)의 수입은 FCWT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베트남기업(D)은 외국인기업(C)를 대신해 FCWT에 대한 신청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할 CIT 금액은 과세소득에 1% 해당한다. (재무부의 2014년08월06일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의 제13.2a조에 규정된 상업활동의 경우) (박닌세무당국의 2021년3월29일 제478/CTBNI-TTHT 호 OL)

외국인 계약자가 “직접법” 외국인계약자세 신고방법을 적용한 경우 최종 정산 기간

2020년 12월 5일부터 세금신고 및 정산은 신규 제126/2020/NĐ-CP호 시행령에 따라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직접법”을 적용하기로 한 외국인 계약자는 계약 종료 시 법인세를 정산해야 한다. (제126/2020/ND-CP호, 제8.6.e조)

(하노이 세구당국 의 2021년 3월 29일 제9157/CTHN-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cont.)

재무부는 담배 및 주류의 전자인지 (Electronic stamps) 인쇄, 발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안내하는 제23/2021/TT-BTC호 시행규칙을 발행했다

전자인지는 가시적이며, 세무총국 및 관세총국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와 주류에 대한, 전자인지 부착에 관한 규정은 제품에 인지부착에 대한 현행 규정과 같다.

그 중에서는:

- 각 담배갑에는 1개의 전자인지가 부착되어 있다. 담배갑이 셀로판 포장지를 싸인 경우, 셀로판 포장지를 사용하기 전에 전자인지는 담배갑이 열릴 때 찢어질 수 있도록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 술에 대해서는 각 병에 1개의 전자인지가 부착되어 있다. 술 병이 셀로판 포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셀로판 포장지를 싸기 전에 전자인지를 병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병뚜껑, 병꼭지 등의 술이 나온 위치에 전자인지를 부착하여 병뚜껑을 열릴 때 전자인지가 찢어져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관세총국은 수입된 담배 및 주류의 전자인지를 인쇄·발행·판매를 수행하며, 세무총국은 국내 판매용으로 생산된 담배 및 술의 전자인지를 인쇄·발행·판매를 담당한다

본시행규칙은 2021년 5월 15일로부터 시행된다.

(재무부의 2021년3월30일 제 23/2021/TT-BTC호 시행규칙)

수출가공기업 (EPE)은 외국기업에 임가공 작업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 면제

제82/2018/NĐ-CP 호 시행령, 제30.1조 에 따라 EPE은 비관세구역에 대한 정책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EPE와 외국 기업 간에 수출입되는 재화에 대해 제107/2016/QH13호 수출입세법, 제2.4조에 따라 수출입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 제1.36조에 따라 EPE은 관세당국에 임가공 계약 및 부록에 대한 통지가 면제된다.

따라서, EPE가 외국기업과 임가공 작업을 계약한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할 때 세무상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며, 임가공 계약에 대한 통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단, EPE는 임가공 계약 시의 원재료의 적절한 사용을 감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관세총국의 2021년 3월 12일 제/No. 412/GSQL-GQ2 호 OL)

수출가공기업(EPE)의 하드펜스 구축 지침

제107/2016/QH13호수출입세법, 제4.1조에 따라 수출가공기업 (EPE)은 "하드펜스"로 바깥쪽 영토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하드펜스"는 제82/2018/NĐ-CP호, 제30.2조에 따라 펜스 시스템, 게이트, 출입문 있으며, 관세당국의 감독이 가능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EPE의 " 하드펜스" 건설은 재무부의2014년 9월 25일 제13512/BTC-CST호OL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드펜스는 관세당국의 감독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며, EPE와 바깥쪽 영토구역과 분리할 수 있는 재료로 지어져야 한다. 본 규정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관세총국의 2021년 3월 4일 제350/GSQL-GQ2 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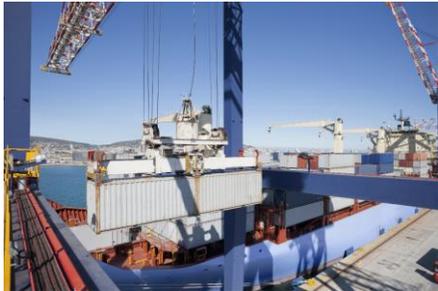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cont.)

유럽연합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EVFTA") 하의 일부 조항을 적용에 관한 주요 사항

1. EVFTA 하의 원산지 증명서 ("P/O") 에 대한 유의 사항

- 자체 원산지 증명서 (P/O)는 REX 코드 등록 후 EU에 의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P/O는 REX 코드 발효일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따라서, REX 코드의 시행일 전에 P/O가 발급되는 경우, 해당 P/O가 무효로 간주된다.
- 수정/교체된 P/O의 재제출은 관세신고서에 이를 통보된 경우 적용된다. (제38/2018 / TT-BTC호 시행규칙, 제7.4조).
- EVFTA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2020년 8월 1일로부터 제111호/2020호/ND-CP호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 P/O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 EVFTA의 발효일 전에 자체 원산지 증명서 (P/O)가 유효하지 않는다.
- 자체 원산지 증명서 (P/O)에 발급 날짜 및 장소를 표시되지 않는 경우 관세당국은 PL (Packing list)의 발급 날짜와 장소를 근거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2월 05일 제712/TCHQ-GSQL 호 OL)

2. EVFTA하의 우대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3자 인보이스

EVFTA하의 우대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품은 제111/2020/ND-CP호 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제품은 EVFTA 관세 혜택 일정에 등재되어 있고 EVFTA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며, EVFTA에 따라 유효한 P/O를 가진다.

EVFTA에 따른 "수출자"의 정의는 제11/2020/TT-BCT의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EVFTA 우대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출자"는 반드시 인보이스 발행자가 아닌 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일 수도 있다. (즉, 즉, 발송물의 인보이스는 EVFTA의 회원국 아닌 제3자에 의해 발행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은 REX코드를 등록한 수출업체의 원산지 자체 발급 증명서 (P/O)를 근거하여 EU를 원산지로 하는 발송물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3월 12일 제406/GSQL-GQ4 호 OL 및 호치민 관세당국의 2021년 3월 30일 제678/HQTPHCM-GSQL호 OL)

3. 선적 통지서(delivery note)통하여 EVFTA 원산지 증명서 자체 발급

EU 수출자(유효한 REX 코드를 가지고 있음)는 제회 정보를 반영하는 송장, 선적 통지서 또는 기타 상업용 증서를 통하여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다.

수출자는 전자문서에 원산지 신고 내용을 인쇄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 신고 단어 및 기타 기준은 제11/2020/TT-BCT호 시행규칙의 VII 부록에 규정된다.

(호치민 관세당국의 2021년 3월 12일 제500/HQTPHCM-GSQL 호 OL)

4. EVFTA에 따라 잘못 발급된 P/O 처리

제38/2018/TT-BTC호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수정 또는 교체를 위한 P/O를 재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래 P/O가 잘못 되었을 경우 기업은 수정/교체된 P/O를 재제출하여 관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EVFTA에 따른 P/O에도 적용된다.

REX코드에 대해서는 신고된 REX 코드는 관세당국에 의한 유효가 있는 경우, "Exporter Reference No..."라는 항목에 신고된 내용은 P/O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세총국 2021년 4월 8일, 제1604/TCHQ-GSQL 호 OL)

5. 유럽 연합의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재화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신고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선적물(EVFTA 관세율 적용 대상)은 여러 EU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며, 다양한 종류의 재화가 있는 경우, 원산지는 "EU" 또는 "유럽연합" (European Union)으로 신고하면 된다.

원산지 신고 내용은 제11/2020/TT-BCT호 시행규칙의 VII 부록에 따라 신고하며, 특정 유럽 국가로 원산지를 신고하면 안 된다.

(관세총국의 2021년 3월 19일 제444/GSQL-GQ4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cont.)

2021년 2월 23일에 제879/TCHQ-TXNK호 OL 적용 지침

1. 사용목적이 변경된 생산 및 수출용 원자재 (“수출 생산”)의 외주가공은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12일 제178/NQ-CP호 결의 및 2021년 02월 23일 제879/TCHQ-TXNK호 OL에 따라 수출생산 목적으로 수입된 원자재 (E31모델 코드)는 일부 외주가공에 사용되고 반제품을 다시 수령해서 계속 생산하거나 바로 수출하면 제107/2016/QH13호 수출입 법령 제16조 7항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관세총국은 상기 정책이 사용목적이 변경된 생산 및 수출용 수입 원자재 또는 사업의 유형에 따른 수입원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적 목적 (A12모드) 또는 수출생산용 수입원자재(E31모드)가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수입세 납부), 외주 가공으로 발송되더라도 제107/2016/QH13호 수출입 관세법령 제16조 7항에 따라 해당 원자재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VAT와 관련하여 생산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원자재는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31조 12항에 따라 수입세 면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VAT 면제가 가능하다.

(관세총국의 2021년04월06일 제1580/TCHQ-TXNK호 OL; 및 관세총국의 2021년04월08일 제1612/TCHQ-TXNK호 OL)

2. 2016년 09월 01일 이전 수입된 원자재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제공된 경우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제107/2016/QH13호 수출입세법 및 제19.1.d조 및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36.1조에 따라, 국외 또는 비관세구역에 제공될 수출생산용으로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납부한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2016년 9월 1일 이전에 수출생산용으로 수입된 원자재의 수입세를 이미 납부하고 2016년 9월 1일 이후 완제품을 국내 법인에 수출한 경우에는 제134/2016/ND-CP호 시행령에 규정된 관세 환급 정책에 따라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2월23일 제879/TCHQ-TXNK호 OL에 따라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4월 21일 제1869/TCHQ-TXNK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Kim Min Je
KSG Manager
+84 90 218 5562
mkim21@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VIETNAM**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